

특 집

오픈액세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글 | 이 미 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실장
netstrolling@cckorea.org
@netstrolling

오픈액세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오늘날 네트워크 정보사회에서 지식, 문화가 독점과 사유화로부터 벗어나 공유되고 퍼져야 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다. 책, 음반, 필름 등 물리적인 매체가 등장하기 전, 전통적인 문화확산 방식은 시간적·지리적 제한은 있었지만 모든 지식과 문화에는 특정한 주인이 있지 않았으며 누구나 보태고 누릴 수 있는 영역이었다. 이후 정보와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콘텐츠가 매체에 고정되고 배포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며 정보상품과 문화상품으로서 대중들에게 확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상업적 보호가 필요한 소수의 저작물을 위해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기간이 확장되었으며, 더불어 창작자들의 생계유지 방법까지도 이 논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정보경제의 출현으로 정보와 문화가 물리적인 매체로부터 독립되어 제약없이 공유가능한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식과 문화가 퍼져나가는 데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쪼개져서 독점되고 산업화된 지식과 문화를 예전처럼 공유재로 되돌릴 수는 없는걸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는 현재의 저작권 하에서 사유화된 자신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바탕으로 공유화를 선언하도록 한다. CC운동은 종이나 책, 음반, 필름 등의 물질적인 매체가 없던 시절 문화와 지식이 전파되던 시절의 가치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음악/영상저작물, 교육자료, 공공정보 등 모든 저작물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의 본질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공유와 보상의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이 중에서 학술저작물의 오픈 액세스 운동은 지식공유의 동기와 목적이 그 무엇보다 공유의 환경과 목적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 상품의 직접적인 판매로부터 얻어지는 이득보다는 더 많은 지식의 전파와 연구결과의 인용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도서관이 세상의 지식을 모으고 전파시키는 책임이 있다면, 오늘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라는 역할에서 봤을 때 기존의 도서관을 대신하는 것은 거대한 웹 자체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정보는 그것에 접근하는 장벽이 되고, 검색되지 않는 콘텐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재창작 가능한 가치있는 정보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CC의 비전이며, 현재의 저작권을 기반으로 하여 저작자가 직접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미리 허락하는 도구인 CC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의미

소프트웨어의 오픈라이선스인 GPL의 자유라이선스 골격을 응용해서 고안된 일반 저작물을 위한 자유라이선스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즉 CCL이다. CCL은 저작권자가 제시한 이용조건 하에서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의 표준계약서이다. 저작자들은 유형별 라이선스 중 조건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들은 그 저작물에 첨부된 라이선스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용자가 CCL에 포함된 이용조건을 위반하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술정보 등의 어문저작물과 달리 이미지, 영상,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저작물들은 '인

용'에 대해 너그럽지 않다. 따라서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때에는 단지 인용의 출처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혹은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 혹은 양도를 받아야만 한다. 누군가가 이용하고 싶은 저작물을 발견했을 때 원칙적인 이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작물의 저작자 혹은 저작권자를 찾아야 한다. 저작물에 저작권자가 명기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겠지만 저작물만으로 저작자와 저작권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학술이나 어문 저작물과 달리 멀티미디어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여러명인 경우가 많다. 어렵게 저작자 혹은 저작권자를 찾은 후에는 이용하고 싶은 의사를 전달하고, 유상 혹은 무상으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을 양도 받는다. 그 이후에야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대부분의 문화상품 산업에서는 특정 창작물을 먼저 만들어 완성한 후에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저작권 클리어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일반에게 공개한다.

CCL 같은 오픈라이선스의 경우, 이용하고 싶은 저작물을 발견했을 때 CCL이 표시되어 있으면 일부러 저작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받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저작자 혹은 저작권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넓은 범위로 미리 이용허락을 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콘텐츠에 대한 CCL 조건을 보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사전이용허락 권한과 조건

CCL에는 사전이용허락으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권한과 따라야 하는 조건을 명기하고 있다. 모든 이용허락규약은 각 나라의 「저작권법」을 토대로 작성되고 번역되었고, 일반증서의 경우 법적인 용어 대신 전세계 어느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공통적으로 인지가능하도록 각 조건들을 요약하고 시각화하여 표기한다.

사전이용허락 권한

- 공유(Share) -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CCL 콘텐츠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과 복제, 재배포에 자유롭다. 이것을 '공유에 자유롭다'고 표현한다. 「저작권법」 상에서의 구체적인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전시권, 공연권, 방송권에 대해 저작자 혹은 저작권자가 사전이용을 허락한 것이다.

• 재창작(Remix) - 개작, 수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수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은 저작권자의 선택에 따라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재창작 권한은 CC조건 중에서 변경금지(non-derivative, ND) 조항, 즉  표시가 없을 시에만 주어진다.

따라야 할 조건

• 저작자 혹은 출처표시(Attribution, BY)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한다.

• 영리사용 금지 혹은 비영리 사용허락(Non-Commercial, NC)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변경금지(Non-Derivative, ND)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 동일조건 변경허락(Share-Alike, SA)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의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해야 한다.

라이선스 종류

앞의 조건들을 각 열에 배치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내용상 변경금지(nonderivative)와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은 동시에 적용될 수 없다.

〈표 1〉 사전이용허락 조건

저작자표시	상업이용	변경
필수	허용	허용
	금지	금지 
		동일조건허락 

각 항목당 조건을 선택하면 6가지의 라이선스 조합을 얻는다.

〈표 2〉 라이선스의 종류 및 이름

종류 및 이름	설 명
 저작자표시(BY)	저작자 혹은 출처를 표시하면 영리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함.
 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	저작자 혹은 출처를 표시하면 영리목적의 이용은 가능하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음.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 혹은 출처를 표시하면 영리목적의 이용이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함. 단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저작자표시-비영리(BY-NC)	저작자 혹은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함.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음.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 혹은 출처를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함.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음.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저작자 혹은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함.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함.

CCL의 현황

대부분의 CCL 도입은 개인 혹은 상업 서비스들이 가치에 대한 지지와 효율성을 위한 필요 등에 의해 자발적인 선택으로 채택된다. 연구자료와 논문자료의 저장소를 비롯하여 민간에서의 UGC 혹은 UCC 서비스처럼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개개인이 직접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창작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각 콘텐츠의 저작권은 콘텐츠 작성자에게 있다. 이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작성된 콘텐츠를 활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자인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웹에서의 콘텐츠는 많이 노출되고 활용될 수록 높은 가치로 측정되는데, 모든 사용자들이 서로에게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것보다는 저작자가 직접 공유를 사전허락하는 형태의 의사표현이 필요하고, 그것이 서비스 제공자가 CCL 표기 옵션을 선택하게 된 큰 이유이다. 그 영역은 블로그, 사진공유 서비스 등 일반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부터 디지털화된 학술자료를 수집받아 저장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CCL 콘텐츠의 저장은 원칙적으로 등록시스템과 다르게 스스로 HTML 코드 혹은 이미지로 라이선스를 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CCL 콘텐츠의 정확한 수량을 집계할 수는 없으므로 검색 결과의 수를 통해 추정하거나, 직접 DB에서의 수량 파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야후의 CC 검색엔진에 의하여 추출된 CCL 적용 콘텐츠의 수적 현황은 뒷장 <표 3>에서 <표 5>까지와 같다.¹⁾ 이 수치는 실제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의 수가 아니라 야후의 검색 엔진에서 걸러진 결과에 불과²⁾하므로 현재의 이용현황에 대한 힌트를 얻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검색 엔진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는 2010년 5월 현재 국내 CCL 적용 콘텐츠 수는 4,879,461건으로 전체 52개국에서 4위에 해당한다. 전 세계 52개국에서 파악되는 CC 콘텐츠 전체 양은 185,712,371건이다.

그러나 CCL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가보다는 얼마나 활용가치가 높은 콘텐츠가 많은가가 더 주목받아야 한다. 물론 활용가치에 대한 기준이 다양할 수 있지만 좀 더 유용한 CCL 콘텐츠들을 더 많이 소개하기 위해서 국내외 CC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CC 사례들을 찾아내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1) CCKorea, 2009, "클린사이트와 인터넷"에서 인용, 데이터는 2011년 현재 가장 최근 업데이트 된 2010년 5월 자료임.

2) 플리커에 있는 사진만 해도 1억장이 넘는데 위 통계에 따른 CCL이 적용된 총 수는 2억개 정도에 불과함.

〈표 3〉 전 세계 CCL 적용 현황

License	by	by-sa	by-nd	by-nc	by-nc-sa	by-nc-nd	Total
Count	17,879,358	73,011,652	4,879,020	24,481,769	33,567,471	31,893,101	185,712,371
Percent	9.63	39.31	2.63	13.18	18.07	17.17	100

〈표 4〉 아시아 지역의 CCL 적용 현황

License	by	by-sa	by-nd	by-nc	by-nc-sa	by-nc-nd	Total
Count	1,341,557	803,584	751,473	685,336	3,457,050	5,128,583	12,167,583
Percent	11.03	6.6	6.18	5.63	28.41	42.15	100

〈표 5〉 우리나라의 CCL 적용 현황

License	by	by-sa	by-nd	by-nc	by-nc-sa	by-nc-nd	Total
Count	125,092	117,759	30,015	167,786	1,396,865	3,041,944	4,879,461
Percent	2.56	2.41	0.62	3.44	28.63	62.34	100

CC라이선스의 적용, 활용, 검색

적용방법

CCL을 표기할 때의 원칙은 라이선스 선택기에서 조건을 선택한 후 나오는 코드를 복사하여 HTML에 붙여넣는 것인데, 여기에는 시맨틱웹의 개념이 적용된 메타데이터가 웹페이지 안에 표시될 수 있는 코드가 들어있다.³⁾ 이렇게 직접 HTML 코드를 넣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도록 온라인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에서 라이선스를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멀티미디어나 오프라인 창작물에는 라이선스의 이미지와 주소를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영리목적 사용을 허락합니까?

예

아니오

저작물의 변경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예, 단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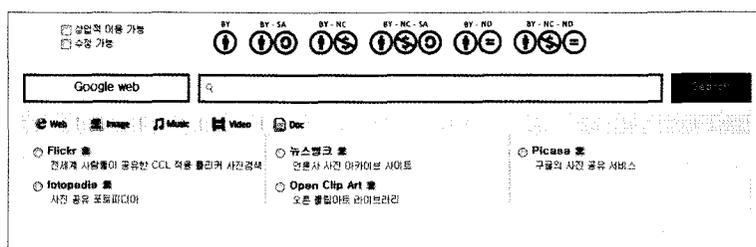
아니오

라이선스의 재판관할

3) <http://creativecommons.org/choose/?lang=ko>

검색방법

검색엔진인 구글의 고급검색, 사진공유 사이트인 플리커의 고급검색 및 네이버와 다음도 부분별로 CCL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검색인터페이스들을 모아놓은 Let's CC[®] 사이트에서는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의 저작물을 CCL의 조건별로 검색할 수 있다.



〈그림 3〉 let's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글로벌 커뮤니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글로벌 커뮤니티

저작물의 이용은 어느 특정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경을 넘나들며 확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한 특징이 더 두드러진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의사표시와 이에 근거한 이용자들의 이용준칙은 되도록 많은 국가에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언어로 적절하게 번역이 되어야 하고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에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CC는 2003년경부터 각 국의 「저작권법」에 부합하는 CCL의 보급을 위해 CCI(Creative Commons International)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70개국에서 CC를 런칭하였거나 준비 중이다. 각 나라에서 라이선스의 현지화를 책임지는 프로젝트 리드(Project Lead)를 중심으로 각국의 언어로 된 CCL을 만들어 보급하고 CC의 이념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각국의 CC 프로젝트는 서로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CCI 및 상호 협의의 하에 기본적인 활동방향을 정하고 CCL의 업그레이드,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발, 공동 이벤트 등을 함께 하고 있다.

6) <http://letscc.ne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CCI 프로젝트에 의하여 2005년 3월 21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 혹은 CC Korea)가 출범하고 CCL의 한국판이 발표되었다. 초기 정보법학회의 별도 프로젝트로 운영되던 CC Korea는 2009년 1월 23일 사단법인으로 독립하였다.

CC Korea는 현재 프로젝트 리더를 포함한 자원활동가 그룹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가 창작자'라는 개념과 더불어 '모두가 활동가'라는 개념으로 50대 교수부터 10대 고등학생까지 법학자, 개발자, 디자이너, 미디어아티스트, 교수, 학생,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에서 모인 자원활동가들이 느슨하거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다양한 프로젝트와 실험에 참여하며 CC의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²⁸

참고문헌

James Boyle, *the Public Domain*. Yale University Press. 2008

Yochai Benkler, *the Wealth of Networks*. Yale University Press. 2006

엘리너 오스트롬 외, *지식의 공유*. 타임북스. 2010

윤종수, *디지털시대의저작권과 CCL*. 2008 [CC-BY]

이미영, *자유이용허락 현황분석*. 2010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11.4 인용] <http://www.creativecommons.or.k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2011.4 인용] <http://www.cckorea.org>

렛츠씨씨. [2011.4 인용] <http://letscc.net>